**‘ 숭실 리서치 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본 회는 숭실대학교 학술동아리‘숭실\_리서치’라 칭한다.(이하 리서치라 한다.)

**제 2조 [목적]**

본 회는 사회/기업 분석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, 향후 개인에게 알맞은 투자방법을 터득하고 실행함으로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1.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A. 기업분석/산업분석 조사 (팀 구성 진행)

B. 직업 설명회 (외부 강사 초청)

C. 공모전/대외활동 자유 참가 (동아리 내 팀 구성)

D. 동아리 자체 투자 대회

2. 상기의 명시된 모든 모임의 날짜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, 집행부의 건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**본 회는 모든 임원진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다.**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**본 회의 임원진 선출 방식은**

1. **지원 형태로, 동아리원 명단에 있는 사람 중 임원진 지원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면접 및 선택권을 부여한다.**
2. **지원자가 없는 경우, 전임 회장의 권한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 후 동아리원들의 투표 하에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.  
   당선된 차기 회장이 이후 부족한 임원진의 자리를 채워갈 권한을 가진다.**

**제 3조 [임원진]**

**본 회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.**

1. **회장: 본 회를 대표하며, 모든 활동들을 총괄한다.**
2. **부회장: 회장을 보좌하는 위치로, 동아리 활동 시 항상 보필한다.**
3. **사무국: 인사관리, 재무관리를 하는 인원으로, 총 3인을 선정한다. (인사부 1명, 홍무부 2명)**
4. **기획/홍보국: 동아리 활동 관련 기획 및 활동 사항 홍보를 위한 인원으로, 총 2인을 선정한다. (홍보부 2명)**
5. **복지/관리국: 동아리원들의 복지 및 동아리방 청결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, 총 1인을 선정한다.(회장, 부회장 총 2명)**

**제 4조 [집행부]**

**본 회의 집행부는 위 임원진 중 회장, 사무국, 기획/홍보국이 이에 해당한다.**

**임원진 회의 중 의결권은 모든 임원진들이 갖지만, 실질적인 기획 및 진행은 위 3가지 직무팀이 책임을 갖고 활동한다.**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**본회의 집행부 회의는 매주 수요일 20시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**

**회의 장소: 동아리방, Zoom**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재학생: 본 회 회원 중 1년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한 자 또는 2학년부터 본 회에 가입한 자를 재학생이라 칭한다.
2. 신입회원: 본 회에 처음 들어온 당 학년인 자를 신입회원이라 칭한다.

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, 숭실대학교에 재학중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1. 신입회원은 온/오프라인으로의 서류 및 면접을 통과한 인원들이 이에 해당한다.
2. **가입 조건은 ‘서류점수/관심도/태도’ 이 세가지를 중점 판단하며 총점 20점으로 면접 점수를 설정한다.**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**탈퇴 조건**

1. **본 회를 탈퇴하고 싶은 경우 본인의 의사표현을 임원진에게 통보한다.**
2. **제 3조 1항을 만족하지 않은 회원에 경우에도 본 회의 임원진이 판단 하 탈퇴 처리를 한다.**

**제명 조건**

1. **본 회의 목적/활동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**
2. **회원 상호간 친목에 저해를 가한 경우**
3. **회원 상호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**
4. **기타 임원진의 판단 하 제명이 필요한 경우**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총회]**

**본 회의 정기 총회(세미나)은 격주 수요일 18시 대면 회의를 통해 실시한다. 다만 정기 총회(세미나)의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.**

**제 2조 [총회가 없는 경우]**

1. **중간/기말고사 시험기간 2주 전**
2. **여름/겨울방학**
3. **국가 지정 공휴일**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회비]**

1. **본 회의 회비는 현 진행 학기 활동자에 한해, 신입 부원 20,000원, 기존 부원 25000원 이다. (매 학기 통일)**
2. **1.에 해당하지 않는 현 학기 비활동자들은 회비 납부 의무가 없다.**
3. **모든 회비 납부 기한은 1주일로 제한한다.**
4. **회비는 집행부 의논 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을 공시한다.**
5. **임원진에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하 회비를 면제할 수도 있다.**

**제 2조 [재정 운영 방법]**

1. **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찬조금이 해당한다.**
2. **본 회의 재정은 오직 동아리 발전을 위한 비품 구매 등에 사용한다.**
3. **임원진 및 동아리원 중 그 누구라도 동아리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시,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.**
4. **숭실리서치의 이름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30%는 향후 동아리를 위한 자금으로서 '동아리 발전기금'의 명칭으로 차기 기수 임원진에게 양도한다.**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**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 학기 말 종강 총회 시, 동아리 대표자(회장)와 총무 담당자가 동아리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다. 또한, 관련 자료는 동아리 커뮤니티(인스타 계정, 단톡방)에 투명하게 공개한다.**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**본 회의 동아리 등록에 관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의거한다.**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1. **본 회칙은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**
2. **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통상관례(국가 기본법, 도덕 등)에 의한다.**
3. **본 회칙은 2024.03.20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**
4. **본 회칙 중 개정이 필요한 경우, 집행부의 결의에 의해 개정 가능하다.  
   이와 같은 경우, 변경 사항에 대해 모든 동아리원들에게 공시하고, 찬반 의견을 추합한다.**
5. **본 회칙은 다음 임원진 선출 이전까지 효력이 있음을 밝힌다.**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1. **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, 집행부 정기 회의를 실시한다.**
2. **변경 시, 항상 동아리원들의 찬반 의견을 추합해야만 한다.  
   다만,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반대되어졌을 경우 수정을 금한다.**